#### 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람

## 여 수 시 보

### 시정지표

1. 시민공감 감동시정 1. 균형있는 상생경제 1. 사람중심 나눔복지 1.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삼기좋은 정주화경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 목 자 【고 시】 ○여수시 고시 제2018-246호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변경 허가 고시 /3 【공 고】 ○여수시 공고 제2018-1737호 도로 지정 공고(미평동 신98-2) /4○ 여수시 공고 제2018-1742호 도로지정(변경) 공고(화양면 나진리 산172-5번지외 2필지) /5 ○여수시 공고 제2018-174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/6 ○여수시 공고 제2018-1749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/7○여수시 공고 제2018-1750호 무단방치이류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 /8 ○여수시 공고 제2018-1751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/10 ○ 여수시 공고 제2018-1754호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 /11 회

여수시 고시 제2018-246호

##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	점용사용 점용사용 면적(m²)		m,) /용	점용사용	허가	기간	피 허 기	자	- 비고
(허가일)	장 소	당초	변경	목 적	변경전	변경후	주 소	성 명	0114
2018–86 (2018. 7.30.)	여수시 웅천동 1692번지 지선 공유수면	248 (직접 85/ 간접 163)	801 (직접)	유선 및 수상레저 사업을 위한 접안시설 및 대기실	2013.12. 1.~ 2018.11.30.	2018. 7.30.~ 2023. 7.29.	여수시 예울마루로 30, 112동 1402호 (웅천동,웅천지웰)	` · · ·   —	

2018. 7. 30.

### [여수시 공고 제2018 - 1737호]

## 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미평동 산97-1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로위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미평동 산98-2	6.01	2.5	7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7. 27.

## 도로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172-5번지 외 2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지정(변경)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	130.26	10	1,347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	694-2	10.76	7.1	93	u u	
	산172-2	9.78	10	118	u .	
	696-1	36.3	10	348	u .	
화양면 나진리	692-1	15.5	7	211	u .	
	694-4	4.5	9.6	37	u .	
	산173-1	39.55	10	397	u .	
	산173-6	13.87	9	143	u .	

<sup>\*</sup> 당초 여수시 공고 제2018-239호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7. 27.

#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 광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7. 30.

# 여 수 시 장

### ○ 양수인가 내용

구 분	허가번호	발전소명	대표자	용량 (kW)	설치장소	비고
양수인	여수 제39호	여수안포리 태양광발전소1호	김정세자	00	여수시 화양면	양수인가
양도인	(2014.12.22)	여수안포리 태양광발전소1호	서희정	99	안포리 1486	('18.7.30)

# 전문건설업 등록말소(국세청폐업)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12호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이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1. 행정처분 대상 업체

상 호 (대표자)	법 인 등록번호	영업소재지	해당업종	처분내용	처분근거	국세청 확인 폐 업 일 자
(합)백승건설 백용인		도원로 157, 201호(선원동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거창2002-10-05	2018. 7.30. 등록말소	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제12호	2018. 4.30.

2. 공고 기간 : 2018. 7.30. ~ 8.14.(15일간)

3. 공고 장소 : 홈페이지 및 시보

#### 4. 기 타

- 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 종합정보망(www.kiscon.net)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「행정심판법」제27조(심판청구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05)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
2018년 7월 30일여수시장

# 무단방치이륜차 강제(폐차)처리 공고

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『자동차관리법』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(폐차)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이륜차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·말소 등 자진 처리하시기바랍니다.

#### 2018년 7월 30일

- 1. 공고기간 : 2018년 7월 30일 ~ 2018년 8월 14일(15일간)
- 2. 강제처리(폐차) 일시 : 2018년 8월 20일 이후
- 3. 강제처리(폐차) 장소 : 관내 폐차장
- 4. 강제처리(폐차) 대상 : 이륜차 1대 【붙임 내역참조】
- 5. 소유자(점유자) 유의사항
  - 본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(매각·폐차) 됨을 알려 드리며 소유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『자동차관리법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(20~100만원)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강제처리(폐차) 시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 자(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- 6. 문 의 처 : 여수시 교통과 061-659-4145
- ※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함.

# 강제(폐차)처리 대상 무단방치 이륜차

관리번호 2018 - 39 ○ 차량번호 : 미상 ○ 소 유 자 : 미상 ○ 방치내역 - 견인예정일 : 2018. 8. 20.이후 - 방치장소 : 여수시 선원동 남양 아파트 203동 뒤 관리번호 2018 -○ 차량번호 : ○ 소 유 자 : ○ 방치내역 - 견인예정일: - 방치장소:

(80\*80)

#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 교부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(시정명령 등)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0일

## 여 수 시 장

#### 1. 시정명령 대상 업체

업체명 (대표자)	소 재 지	소 재 지 처분업종		처분내용	처분근거
대명이엔씨(주)	무선6길 42-9	상·하수도설비공사업	건설기계 대여대금	시정명령	건설산업기본법
김춘희	(선원동)	여수2014-11-03	지급보증서 미교부		제81조 제4호

2. 시정명령일시 : 2018. 7.30.

3. 시정명령 이행기간 : 2018. 7.30~8.10.

4. 법 적 근 거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1조(시정명령) 제4호

5. 시정명령내용 :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
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발급하

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.

6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시행규칙 제36조의2(시정명령 등의 보고)에 따라 건설업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여수시 공고 제2018-1754호

### 공 고

「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0일

#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」(안) 입법예고

### 1. 폐지 이유

○ 시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보다 더 심도있는 정책 자문과 사업목적에 맞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「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- ○「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」에 관한 조례 폐지
- 3. 폐지 조례안 : 별첨
- 4. 예고기간 : 2018. 7. 30. ~ 8. 19. (20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시민소통담당관)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다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라. 기타 참고사항 등
  - 1)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1청사)
  - 2) 전 화: 061)659-3082, 팩스: 659-5805
  - 3) 이메일 : cij0582@korea.kr
  - 4)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 제출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	여수시	시민위원회	설치	및 운영	조례	폐지조례(인	<u>F</u> )
○ 성명(단	체명) :						

○ 전 화 번 호 :

○ 주 소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조네한 영국을 대중	찬성	반대	의신(기ㅠ <i>)</i>		

여수시 조례 제 호

# 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

여수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